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2.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법무부에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일반 임기제로 증원하고, 해외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지역 이민정책 핵심과제 실천을 위하여 지역체류 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그중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광주교도소에 마약류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마약사범재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4명, 6급 4명, 7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여성 위탁소년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소년분류심사원 과밀 해소 및 교정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하에 안산지원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1:1 전담 관리 확대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을 증원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6명(6급 17명, 7급 23명, 8급 23명, 9급 23명), 소년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소년원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과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평가대상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25. 12. 31. 공포·2026. 1. 1.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 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하에 안산지원 하부조직으로 교무과와 분류심사과를 상계신설 하면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폐지하고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직급을 하향조정(4급→4·5급)하며,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복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사무운영

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교도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출입국관리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며, 직무분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의 직무분야를 의료시설 담당에서 의료행정 담당으로 전환하고,

보호관찰소 수사팀 조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본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9.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출입국기획과·출입국심사과·체류관리과·이민조사과·이민정보과·외국인정책과·국적과·이민통합과·난민정책과·난민심의”를 “출입국기획과·출입국심사과·체류관리과·지역체류지원과·이민조사과·이민정보과·외국인정책과·국적과·이민통합과·난민정책과·난민심의”로, “체류관리과장”을 “체류관리과장, 지역체류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체류지원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9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역체류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광역형 비자 제도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4.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7.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계절근로자 지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기획·총괄 및 조정

제9조제12항(중전의 제1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외국인 유입규모 및 적정 비자 발급규모 산정·공표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마약사범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사범 처우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 치료재활 효과 분석, 상담, 심리 검사 및 평가
4. 마약류사범의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항 중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별표 2의2와”를 “별표 2의3과”로 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1조의2) 제2항 중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두고, 부

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장하고,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를 “분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표 2의3과”를 “별표 2의4와”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지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3과 같다.

④ 지원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지원 분류심사과장은 제21조제5항, 제6항 및 제9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원 교무과장은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제5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제3항 중 “공공데이터”를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로 한다.

제33조제10항제3호 전단 중 “의료시설”을 “의료행정”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로 하고, 별표 2

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3(중전의 별표 2의2)의 제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 (제20조, 제21조 관련)”을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3(중전의 별표 2의2)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교무과, 분류심사과
-------------------	------------

별표 2의4(중전의 별표 2의3) 중 “(제21조의2 관련)”을 “(제21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대전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대전보호관찰소공주지소,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를 “대전보호관찰소의 지소”로 하고, 같은 표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 대구보호관찰소포항지소,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의 지소”로 하며, 같은 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천안시 · 아산시

별표 3의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 달서구 · 달성군, 성주군 · 고령군

별표 5 중 총계 “771”을 “779”로, 일반직 계 “734”를 “742”로, 서기관 “17”을 “18”로,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3”을 “4”로, 검찰사무관 “19”를 “2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 “29”를 “30”으로, 행정사무관 · 검찰사

무관 또는 교정관 “20”을 “21”로 한다.

별표 5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를 신설, 출입국관리주사 “36”을 “37”로,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3”을 “14”로,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22”를 “20”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71”을 “779”로, 일반직 계 “734”를 “742”로, 서기관 “17”을 “18”로,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3”을 “4”로, 검찰사무관 “19”를 “2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 “31”을 “32”로,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20”을 “21”로 한다.

별표 5의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를 신설, 출입국관리주사 “34”를 “35”로,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3”을 “14”로,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22”를 “2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625”를 각각 “16,641”로, 교정관 “342”를 “346”으로, 교감 “1,496”을 “1,500”으로, 교위 “1,836”을 “1,840”으로,

교도 “6,038”을 “6,04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625”를 각각 “16,641”로, 교정관 “353”을 “357”로, 교감 “1,485”를 “1,489”로, 교위 “1,836”을 “1,840”으로, 교도 “6,038”을 “6,04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8 사무운영서기보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의료행정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67”을 각각 “976”으로,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를 “10”으로, 보호주사 “104”를 “106”으로, 보호서기 “188”을 “189”로, 보호서기보 “171”을 “174”로, 조리서기보 “57”을 “59”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30”을 각각 “2,144”로, 보호주사 “342”를 “380”으로, 보호주사보 “473”을 “516”으로, 보호서기 “486”을 “505”로, 보호서기보 “417”을 “431”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30”을 각각 “2,144”로, 보호주사 “342”를 “380”으로, 보호주사보 “482”를 “525”로, 보호서기 “495”를 “514”로, 보호서기보 “399”를 “413”으로 한다.

별표 12 중 출입국관리서기보 526 다음에 “출입국관리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출입국관리서기보 526 다음에 “출입국관리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16조 관련)

명 칭	부 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천안개방교도소·경북직업훈련교도소·원주교도소·안동교도소·공주교도소·경북북부제3교도소·홍성교도소·경주교도소·강릉교도소·장흥교도소·영월교도소·해남교도소·상주교도소·정읍교도소·강원북부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포항교도소·춘천교도소·청주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마약사범재활과
대전교도소·대구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특별사법경찰팀
광주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특별사법경찰팀, 마약사범재활과
전주교도소·창원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여주교도소·순천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목포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마약사범재활과
군산교도소·진주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천안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국제협력과, 심리치료과
안양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심리치료과, 특별사법경찰팀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특별사법경찰팀
제주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통영구치소 · 밀양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수용기록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충주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수용기록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울산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부산구치소 · 수원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인천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특별사법경찰팀
대구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서울구치소 ·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특별사법경찰팀
거창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지원의 명칭·위치(제21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경기도 안산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

1. 법무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권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9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2) 국제법무국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6년 6월 30일까지
3)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3명 (3·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6명 (4급·검사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6월 30일까지
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 체류지원과	6명 (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명 (6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2027년 9월 30일까지

2)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1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7급 3명)	2028년 3월 31일까지
3) 외국인보호위원회 조사과	13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	2028년 3월 31일까지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마약사범 재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5) 부산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6) 청주여자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7) 광주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3명 (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88명 (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5)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7)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20명 (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8)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55명 (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9)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61명 (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10)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3명 (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④ (생략) 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u>출입국기획과·출입국심사과·</u> <u>체류관리과·이민조사과·이민</u> <u>정보과·외국인정책과·국적과</u> <u>·이민통합과·난민정책과·난</u> <u>민심의회</u> 및 외국인정보빅데이 터팀을 두며,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u>체류관리과</u> 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 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 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u><신설></u> 2. ~ 11. (생략)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출입국기획과·출입국심사과·</u> <u>체류관리과·지역체류지원과·</u> <u>이민조사과·이민정보과·외국</u> <u>인정책과·국적과·이민통합과</u> <u>·난민정책과·난민심의회</u> 과----- ----- ----- <u>체류관리과</u> <u>장, 지역체류지원과장</u> ----- ----- ----- ----- ----- ----- ----- ----- ----- ----- ⑥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u> <u>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u> <u>항</u> 2. ~ 11.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⑧ ----- ----- . 다만,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체류지원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신 설>	1. ~ 11. (현행과 같음) ⑨ 지역체류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광역형 비자 제도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4.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7.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⑨·⑩ (생 략)	8.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계절근로자 지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⑩·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⑫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10. (현행과 같음) 11. 외국인 유입규모 및 적정 비자 발급규모 산정·공표 등에 관한 사항 ⑬ ~ ⑰ (현행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 ㉓ (생 략) <신 설>
⑪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3. ~ 10. (생 략) <신 설>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 ㉓ (현행과 같음) ㉔ 마약사범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사범 처우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 치료재활 효과 분석, 상담, 심리 검사 및 평가 4. 마약류사범의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에 관한 사항		
제20조(소년원) ① (생략)	제20조(소년원) ①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제21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② 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u>별표 2의2</u> 과 같다.	② ----- -- <u>별표 2의3</u> -----.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② <u>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두고,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u>	② <u>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u> ----- ----- ----- ----- -----.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 (생략)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u>별표 2의2</u> 와 같다.	② ----- ----- <u>별표 2의3</u> 과 ---.	④ <u>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1. <u>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u>	
<u><신 설></u>	제21조의2(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① <u>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u>	2. <u>문서의 접수·발송 및 보존과 통계</u>	
	② <u>지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u>	3. <u>인사·복무 및 교육훈련</u>	
	③ <u>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3과 같다.</u>	4. <u>보고·예산·결산 및 금전의 출납</u>	
	④ <u>지원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u>	5. <u>국유재산·물품 및 청사시설</u>	

<u>의 관리</u> 6. 급식·급여 및 연금 7.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생 략)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⑦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u>별표 2의3과</u> 같다.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④ (생 략)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u><신 설></u>	⑤ (현행과 같음) ⑥ ----- -- 분장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 11. (현행 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⑦----- ----- <u>별표 2의4와</u> ---.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u>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u>	15. ~ 21. (생 략) ⑥ ~ ㉔ (생 략)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u>공공데이터</u>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보안을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생 략) 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2. (생 략) 3.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1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 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약무직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u>력·지원에 관한 사항</u> 15. ~ 21. (현행과 같음) ⑥ ~ ㉔ (현행과 같음)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u> ----- ----- ----- ----- ----- --.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771	779		+8	
		·		·	·		
		·		·	·		
일반직	계		734	742		+8	
		·		·	·		
		·		·	·		
서기관			17	18		+1	
		·		·	·		
		·		·	·		
서기관		또는	3	4		+1	
출입국관리사무관							
		·		·	·		
		·		·	·		
검찰사무관			19	20		+1	
		·		·	·		
출입국관리사무관			29	30		+1	
		·		·	·		
		·		·	·		

보호직 1명(6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1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명. 이 경우 정원 중 의무직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의료행정----- -----. ----- ----- ----- ----- ----- -----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u>20</u>	<u>21</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신 설>	<u>1</u>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신 설>	<u>1</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36</u>	<u>37</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u>13</u>	<u>14</u>	+1
·	·	·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u>1</u>	<u>2</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2</u>	<u>20</u>	-2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771</u>	<u>779</u>	+8
•	•	•	
•	•	•	
일반직 계	<u>734</u>	<u>742</u>	+8
•	•	•	
•	•	•	
서기관	<u>17</u>	<u>18</u>	+1
•	•	•	
•	•	•	
서기관 또는	<u>3</u>	<u>4</u>	+1
출입국관리사무관			
•	•	•	
•	•	•	
검찰사무관	<u>19</u>	<u>20</u>	+1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31</u>	<u>32</u>	+1
•	•	•	
•	•	•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u>20</u>	<u>21</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신 설>	<u>1</u>	+1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 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신 설>	<u>1</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34</u>	<u>35</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u>13</u>	<u>14</u>	+1
•	•	•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u>1</u>	<u>2</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2</u>	<u>20</u>	-2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6,625</u>	• <u>16,641</u>	+16
일반직 계	<u>16,625</u>	<u>16,641</u>	+16
•	•	•	
•	•	•	
교정관	<u>342</u>	<u>346</u>	+4
•	•	•	
•	•	•	
교감	<u>1,496</u>	<u>1,500</u>	+4
•	•	•	
•	•	•	
교위	<u>1,836</u>	<u>1,840</u>	+4
•	•	•	
•	•	•	
교도	<u>6,038</u>	<u>6,043</u>	+5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6</u>	<u>5</u>	-1
•	•	•	

.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6,625	16,641	+16
일반직 계	16,625	16,641	+16
교정관	353	357	+4
교감	1,485	1,489	+4
교위	1,836	1,840	+4
교도	6,038	6,043	+5
사무운영서기보	6	5	-1

.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전 문 경 력 관 가군(의료행정 담당)	<신 설>	<u>1</u>	+1
전 문 경 력 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u>1</u>	<삭 제>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	.	.	
---	---	---	--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967</u>	<u>976</u>	+9
일반직 계	<u>967</u>	<u>976</u>	+9
·	·	·	
·	·	·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u>9</u>	<u>10</u>	+1
·	·	·	
·	·	·	
보호주사	<u>104</u>	<u>106</u>	+2
·	·	·	
·	·	·	
보호서기	<u>188</u>	<u>189</u>	+1
·	·	·	
·	·	·	
보호서기보	<u>171</u>	<u>174</u>	+3
·	·	·	
·	·	·	
조리서기보	<u>57</u>	<u>59</u>	+2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030</u>	<u>2,144</u>	+114
일반직 계	<u>2,030</u>	<u>2,144</u>	+114
·	·	·	
·	·	·	
보호주사	<u>342</u>	<u>380</u>	+38
·	·	·	
·	·	·	
보호주사보	<u>473</u>	<u>516</u>	+43
·	·	·	
보호서기	<u>486</u>	<u>505</u>	+19
·	·	·	
·	·	·	
보호서기보	<u>417</u>	<u>431</u>	+14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의2]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030</u>	<u>2,144</u>	+114
일반직 계	<u>2,030</u>	<u>2,144</u>	+114
·	·	·	
·	·	·	
보호주사	<u>342</u>	<u>380</u>	+38
·	·	·	
·	·	·	
보호주사보	<u>482</u>	<u>525</u>	+43
·	·	·	
보호서기	<u>495</u>	<u>514</u>	+19
·	·	·	
·	·	·	
보호서기보	<u>399</u>	<u>413</u>	+14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출입국관리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u>	<u><신 설></u>	<u>1</u>	+1
공업서기보	<u>6</u>	<u>5</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출입국관리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u>	<u><신 설></u>	<u>1</u>	+1
공업서기보	<u>6</u>	<u>5</u>	-1
·	·	·	
·	·	·	